

산부인과 의사 및 병원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보험가입 문의처

KGI 한국단체보험

Tel. 02-717-9481

Fax. 050-7770-7374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사업. (대한산부인과 의사 사회 담당)

상품내용

보험개시일 이후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중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유형별 담보내용

산부인과 F1 Case A

단순진료

(수술, 분만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산부인과 F2 Case B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3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산부인과 F3 Case F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3주 이하 임신중절, **비만관련 성형수술 포함**)

산부인과 F4 Case C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4주 이상 **28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산부인과 F5 Case D

분만 및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3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산부인과 F6 Case E

분만 및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4주 이상 **28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마취과

마취과 · 외과전문의

단순처치(단순검사행위포함) + 부분/전신마취

(척추마취, 경막외마취, 정맥마취, 흡입마취)

내과 계열

내과 · 가정의학과 ·

소아청소년과 · 영상의학과전문의

기본진료(외래)로서 통상적인주사, 투약, 단순국소마취

공제금액

최소 2백만원 ~ 최대 3천만원

보상한도

최소 5천만원 ~ 최대 5억원

특별약관 요약

01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점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 강요에 대응하여 사건처리, 수습 또는 조정을 위해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경호서비스 제공
(경호원 1인 24시간 기준 연 50일)

02 벌금담보 특별약관

의료행위의 수행 중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별도의 보상한도액 설정)

03 형사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

04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특별약관

의료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상해손해와 재물손해를 보상
(별도의 보상한도액 설정)

05 초빙의 및 마취의 담보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
(마취의사 포함)

06 의료분쟁 관련 가처분 신청비용 보장 특별약관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환자 측이 제기하는 시위, 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보험조건에 따라 지급

주요 보험조건

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 60일

선택적보고연장기간 : 1년

- 보험기간 : 1년
- 산부인과 개원의 의료과실 배상책임 보험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
- 만기시점 누적경과 손해율 150% 미만 계약자에 한해 가입가능

보험료분납특별약관 : 2 분납(2%할증) / 4 분납(3%할증)

2분납 : 1회차(60%), 2회차(5개월후 40%)

4분납 : 1회차(35%), 2회차(2개월후 25%), 3회차(5개월후 20%), 4회차(8개월후 20%)

단,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료에만 적용하며, 특약보험료는 1회납 납입시 일시납 납입조건

대진의 보장 (단, 다음에 한함)

- 운용기간 : 연중 30일 (세미나, 학술대회, 휴가, 예비군훈련 등)
- 대진의의 진료범위는 기존고객의 통상적인 의료행위 및 간단한 처방에 국한되며 고도의 처방을 요하는 진료는 보험 증권상의 피보험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대진의(당직의) 담보 : 운영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진료의 경우, '초빙의/마취의 담보' 특별약관 가입 사항임.
- 대진의 사용 전 사전 통보된 경우만 담보.

“당직의”의 정의 : 기명피보험자인 개원의에 의해 일정기간 고용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 퇴근 후 출근 전까지 환자접수 및 응급조치수준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복수의사 가입시 할인 : 10명이상 최대 35~40% 할인 적용

CASE D, E의 경우 월 평균 분만 건수 10건 이하인 경우 5%할인

가입시 전년도 분만대장 혹은 국민건강관리공단 보험금 청구자료 제출조건

손해분담특별약관 : 피보험자분담비율 10%

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피보험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